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안보 및 안전유지 강화 등 수출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「대외무역법」 개정안이 지난 3.18일 공포됨에 따라 상황허가 대상에 재래식무기를 명확히 하고 자가판정의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전략물자 판정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판정 등의 업무 위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상황허가 대상 명확화(제33조제1항)

- 현재도 제도적 틀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운영 중인 재래식무기에 대한 상황허가 근거를 명확히 규정

나. 전략물자 판정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 등 업무 위탁(제37조제2항)

- 전략물자 판정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「원자력안전법」 제6조에 따른 “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”에 판정 등의 업무를 위탁
- 다만, 판정 대상 품목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규정

다. 자가판정시 교육 및 자료등록 의무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

(제94조, 별표4)

- 자가판정시 교육 및 자료등록 의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 기준 조항에 반영하고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(5백만원) 등을 고려하여 위반 차수별 부과금액 마련

* 부과금액(만원) : (1차 위반) 250 → (2차 위반) 350 → (3차 이상 위반) 500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○ ○ ○ ○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3. 30. ~ 5. 11.)

대통령령 제 호

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미사일”을 “미사일 및 재래식무기”로 한다.

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자력 전용품목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에 대한 제36조제2항에 따른 판정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.

제94조 중 “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”을 “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 한다.

별표 4 제1호나목 중 “제2호가목”을 “제2호가목 및 나목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제2호다목”을 “제2호라목”으로 하며, 같은 표 제2호 가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교육 이수 또는 전략물자 수출입관	법 제59조 제3항	250	350	500
--	--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

이 영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1. ~ 5. (생 략) ② (생 략) 제37조(전략물자 판정 관련 전문 기관) (생 략) <신 설>	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37조(전략물자 판정 관련 전문 기관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자력 전용품목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에 대한 제36조제2항에 따른 판정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.
제9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	제9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----- ----- 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	
연 락 처	(044) 203 - 4023